

의안번호	2203374
의 퇴 인	송기헌의원
회 답 일	2024. 10. 15.
추 계 번호	24B337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억 1,300만원, 2030년 28억 5,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1억 4,700만원(연평균 26억 2,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건수, 심사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안 제7조제2항) -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비용	2,413	2,517	2,625	2,737	2,855	13,147	2,629

주: 1.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

2. 추계기간 동안 연간 심사대상 건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2항(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함(제2항)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제3항 신설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려면 제2항에 따른 <u>지하수영향조사서를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u> 다만,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27조제1항(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u>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u>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u>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u> (제1항)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로 변경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제2항(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 일부추계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비용(지방비)
2	안 제7조제3항 신설(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 미대상 -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는 시·도의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공보 포함),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 의견서를 제출받는 절차로, 시·도의 행정조사 등으로 가능한 사항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지방비)는 미미하여 기본경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7조제1항(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시스템 구축 비용, 신청 후 지도·점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그러나 신규·변경등록 신청 건수, 시스템 구축 규모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 통계자료 등이 부재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 조사·측정 자료의 생산·수집·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구축·운영중임 (https://www.gims.go.kr)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단가에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중급기술자 기준) 연평균 증가율(2015~2023년)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하수영향조사 개요

-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²⁾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

1)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업체 중급기술자 임금 추이

<연도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실태조사(환경부문): 2015~2023년>

(중급기술자 기준, 단위: 원/인·일)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기술등급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중급기술자	183,703	182,691	196,148	197,330	199,510	207,859	221,815	246,709	257,066	4.3%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3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2023.12.6. (적용일: 2024.1.1.)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 통계 > 임금실태)

<<https://www.etis.or.kr/bbsList.do?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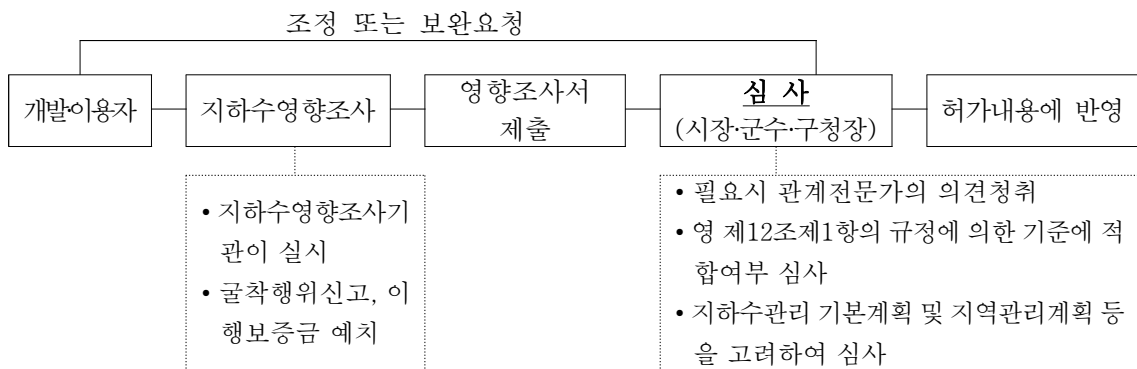
2) [참고자료 1] 지하수개발·이용 등 관련 절차 참고

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및 시행중

□ 적용대상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그림 1] 지하수영향조사 업무흐름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음

[표 2]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2018~2022년

(단위: 개소, m³, 건)

			2018	2019	2020	2021	2022
지하수시설 수			1,640,374	1,659,302	1,687,515	1,719,625	1,774,692
지하수이용량			2,913,531,315	2,916,307,630	2,978,287,781	2,980,471,572	3,039,153,540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누계	28,954	29,694	31,093	30,779	30,943
		신규	1,334	1,134	1,251	1,280	1,035
	신고	누계	1,477,587	1,502,135	1,529,819	1,563,231	1,617,482
		신규	39,639	32,685	31,790	52,362	58,37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수			849	904	705	833	871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연도별 지하수조사연보, 2019~2023년)

<<https://www.gims.go.kr/waterAnnals.do?tgu=A>>

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수행
(안 제7조제2항)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함)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심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서 심사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지방비)이 발생함

□ 본 추계는 연도별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건수 및 심사비 단가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조사서 심사비용에 대해 추계함

○ (연간 심사 건수) 심사 대상은 ‘신규허가’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로 구분

－ (신규허가 건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허가 건수인 1,207건으로 가정

－ (유효기간 연장허가 건수) 현행법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³⁾ 매년 6,189건으로 가정

* 2022년 말 기준, 누적 30,943건을 5년간 균분한 건수(6,189건=30,943건/5년)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신규허가 건수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 건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 2018~2022년

(단위: 개소, m³, 건)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또는 5년 균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건수	신규	1,334	1,134	1,251	1,280	1,035	1,207
	누적	28,954	29,694	31,093	30,779	30,943	6,18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연도별 지하수조사연보, 2019~2023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https://www.gims.go.kr/waterAnnals.do?tgU=A>>

○ (심사 단가) 조사서 심사 단가는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1건당 30만원으로 가정(2024년 기준)

－ 조사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기술자문료*

* 허가 가능량이 신규개발 가능량 이내 범위 여부, 1일 적정 취수량 여부, 주변 잠재오염원,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 검토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심사 단가에 2015~2023년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중급기술자 기준) 연평균 증가율 4.3% 적용

3) 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추계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1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건수, 심사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표 4]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건수	신규허가	1,207	1,207	1,207	1,207	1,207	—
	연장허가	6,189	6,189	6,189	6,189	6,189	—
	소계(A, 건)	7,396	7,396	7,396	7,396	7,396	—
1건당 심사비용 (B, 백만원/건)		0.33	0.34	0.35	0.37	0.39	—
심사비용 (C=A×B, 백만원)		2,413	2,517	2,625	2,737	2,855	13,147

주: 1.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

2. 추계기간 동안 연간 심사대상 건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건수, 심사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지하수개발·이용 등 관련 절차

(환경부 제출자료)

□ 지하수개발·이용 등 관련 절차

- **(배경 및 목적)**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적용대상

용 도	구 분	허가/신고 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안쪽지름 40mm) 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안쪽지름 40mm) 이하	신 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안쪽지름 50mm) 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안쪽지름 50mm) 이하	신 고
국방·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 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안쪽지름이 32mm 이상인 경우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 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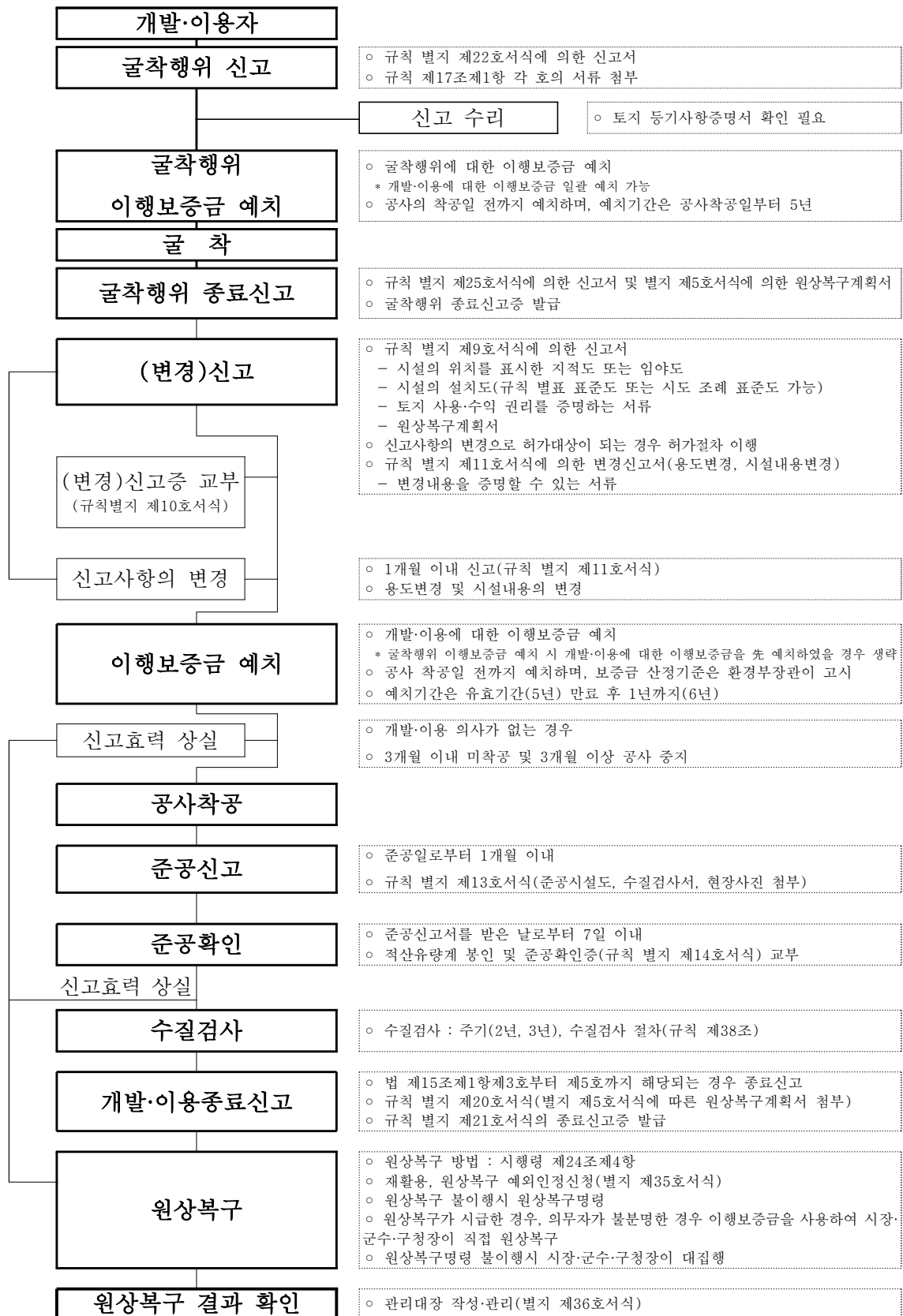
○ 관련조문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9조의2(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제10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 허가절차



□ 신고절차



[참고자료 2] 지하수보전구역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법 제12조 의거, 시·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 지하수법 제정('93.12) 이후 전국에 2개소(무안군 무안읍, 당진군 합덕읍)가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음

□ 지하수보전구역 현황

- (시행근거)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지정대상) 시·도지사는 지하수 수질·수량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보전·관리에 지장 우려 등이 판단되는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명할수 있음
- (행위제한)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규모 및 특정 유해물질 등을 배출·제조·저장하는 시설의 설치, 수위저하·수질오염 행위 등 제한
- (지정현황) 전국 2개소 지정·관리중(무안읍, 합덕읍)

구 분	무안읍 지반침하지구	합덕 수원보호지구
위 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성동리, 운산리, 소소리 일원
지정일	2002. 4. 3.	2005. 10. 12
면 적	0.32km ²	0.51km ²
지 정 사 유	-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지하수위가 강하하면서 석회규산염암으로 형성된 과쇄암의 하부지반에 하중이 집중되어 지반침하 발생 -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함몰 방지,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 당진군 합덕읍 석우천 주변은 용수원이 풍부하고 대수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공공 급수용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 오염 사전 방지 및 안정적인 취수 도모
효 과	-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하여 지반침하·함몰 방지,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 과도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수질 오염행위 사전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